

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999. 7. 22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7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9년 7월 1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33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제1차(99. 7. 15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이한대)

가.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정과 중복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2조).
-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 및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제3항, 제3조제1항, 제4조제2항).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서 축산폐수 수집·운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률 제35조제5항의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시설·장비 및 자본금등 조건을 구비한 경우

분노등 관련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행위를 개시할 수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.

- 축산폐수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공동 처리장으로 운반·처리하는 경우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3항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철호)

본 조례 개정조례(안)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본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항과 상위법과 중복규제된 조항의 폐지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변경, 상위법 일부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폐지와 처리장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